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2 차 정 보 위 원 회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정직 2·3·4급 직원의 계급정년 1년 연장〉

■ 박선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07호)

2024. 11.

정 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8
1. 국가정보원 직원 평균 퇴직 연령	8
2. 기관별 계급정년 적용 대상인원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선원 · 조정식 · 박민규 · 이수진 · 박지원 · 노종면
오세희 · 추미애 · 강준현 · 김영배 의원(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29.
3. 회부연월일 : 2024.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분 안정성으로 인한 무사 안일 방지,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계급 정년’을 두고 있고,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의 경우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3·4급 직원의 경우 연령 정년에 비해 계급 정년이 과도하게 짧아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량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나치게 짧은 계급정년은 퇴직 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로도 직결됨. 국정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급 직원의 경우 평균 57.1세, 3급은 56.3세, 4급은 55.4세에 계급정년으로 퇴직하고 있음. 2021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만 60세가 넘어야 공무원 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큼, 계급정년을 맞이한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후 약 3~5년간을 별도 연금 수급 없이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직원들이 안정적 근무여건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2·3·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Ⅲ. 검토의견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1항제2호는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에 대하여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2년, 5급 직원 18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2급, 3급 및 4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6년, 8년 및 1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가. 2급 직원: <u>5년</u> 나. 3급 직원: <u>7년</u> 다. 4급 직원: <u>12년</u> 라. (생략) ②·③ (생략)	제22조(정년)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u>6년</u> 나. ----- <u>8년</u> 다. ----- <u>13년</u> 라.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2급, 3급, 4급의 특정직직원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계급정년 제도는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완료된 때에 자동적으로 공직에서 퇴직시키는 제도임. 계급정년 제도는 정년제도와 같이 연령이나 해당 계급에서 해당 기간이 달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공무원 신분보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¹⁾.

계급정년 제도는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신분 안정성으로 인한 무사 안일 방지, 성과에 대한 민감도 향상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 경호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 도입·운영 중임²⁾³⁾.

국가정보원 직원의 계급정년 제도는 1981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전문인력의 조기 퇴직 방지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의 인사 목적에 따라 총 4차례 정년 조정(연장 2회·단축 2회)된 바 있음.

1) 이종영, 「공무원법상 계급정년제도」, 『법학논문집』 제29집 제1호, 2005.

2)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서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법」 제25조에서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경호공무원의 경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2급 4년, 3급 7년, 4급 12년, 5급 16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 제8조에서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연령정년 및 근속정년 제도를 시행 중임.

3) 외무공무원의 경우 종전에 계급정년을 특1급·특2급·1급 8년, 2급 10년, 3급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외무공무원법」 개정(2000. 12. 29. 공포, 2001. 7. 1. 시행)으로 계급정년이 폐지된 바 있음.

<국가정보원 계급정년 제도 변경 연혁>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개정 사유
1981년	7	7	8	10	13	17	○ 직원의 정예화 및 활성화 도모 * 1981.7.1. 중앙정보부직원법 개정
1990년 (연장)	7	8	10	13	폐지	폐지	○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조기 퇴직 방지 및 업무의 능률성 제고 * 1990.4.7.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개정
1994년 (단축)	5	7	9	13	15	-	○ 승진적체의 해소와 조직의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 * 1994.1.1.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개정
2004년 (단축)	폐지	5	7	11	15	-	○ 인사적체의 해소와 조직의 신진 대사 활성화 * 2004.1.1.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
2009년 (연장)	-	5	7	12	18	-	○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무여건 보장 * 2009.1.30.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

자료: 국가정보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는 계급정년 규정을 신설한 구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계급정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정년규정을 변경하는 입법은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 내지 신분관계의 안정이라는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⁴⁾.

4) “공무원의 계급정년제도(階級停年制度)를 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요소인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무한으로 관철할 때 파생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새로운 인재들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 관료제의 민주화를 추구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합리적으로 보완·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만일 계급정년규정(階級停年規定)은 그 시행일 이후에 임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면 조직 내에서 다른 직원과 달리 연령정년까지 신분보장이 확보된 특수계층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계급정년제(階級停年制) 본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헌재 1994. 4. 28. 91헌바15,19(병합)]

개정안에 따라 간부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년씩 연장할 경우,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하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역량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다만, 계급정년 연장 여부는 상하위 계급 및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쟁점으로서, 구성원의 계급과 연령에 따라 인사 적체 등에 따른 일부의 사기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승진 시기 등에 따른 유불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계급정년 연장 여부는 조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정보원 조직 내부의 여론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정년 연장의 효과, 즉 인력운용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더욱이 계급정년제를 운영하는 군인·경찰·경호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국가정보원법」 개정 이후 타 기관의 인사제도와 재정에 미칠 수 있는 효과 등을 재정당국 및 인사혁신처 등과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정보원은 최근 계급정년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전직원 설명회·공청회를 개최(2024년 9월)하는 등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현재 개편 여부 및 방향에 대한 직원 총의 확인과 함께, 계급정년 유지·개편에 따른 예상 소득액 산출 등 장단점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심층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임⁵⁾.

또한,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계급정년 퇴직을 앞둔 2·3·4급 직원들이 예상 퇴직 시점보다 최소 1년 이상 현직에 잔류함으로써 전체 현원이 일정 부분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정보원의 총정원 범위⁶⁾ 내에서 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진 및 채용규모 조정 등 세부 인력운영 계획은 제도 변경 확정 시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다만, 구체적인 계급별 퇴직인원 수, 현행 제도 및 개정안에 따른 퇴직인원 예상치 등은 「국가정보원법」 제8조⁷⁾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추계는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 6788-5614

5)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정원 의견」, 2024.11.

6)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직원) ① (생략)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7) 「국가정보원법」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참고자료

1. 국가정보원 직원 평균 퇴직 연령

구 분	2급	3급	4급	5급
전체 퇴직	57.5세	57.0세	56.0세	54.2세
계급정년 퇴직	57.0세	56.5세	55.7세	55.1세

주: 2014년~2023년간 퇴직 직원의 평균연령임.

전체 퇴직은 연령정년, 계급정년, 명예퇴직, 기타퇴직(징계·의원면직 등) 유형을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국가정보원

2. 기관별 계급정년 적용 대상인원

구 분	전체정원	계급정년 대상	비율
국가정보원	-	-	67.6%
경찰	131,046명 (치안총감~순경)	3,837명 (치안감~경정)	2.9%
소방	66,216명 (소방총감~소방사)	2,185명 (소방감~소방령)	3.3%
경호	411명	230명	56%

주: 국가정보원은 2024년, 경찰·소방은 2023년, 경호는 2022년 기준 자료임.

자료: 국가정보원, 경찰청 통계연보(2023년), 소방인력현황(국가통계포털),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정원표(2022년)